

화장실 위생용품 관리 시방서

제1조 (범위)

본 시방은 조선대학교병원 원내 화장실 및 E/V, 병동, 사무실 등 위생용품 (소변기 세정제, 방향제, 거품비누, 유성겔 등) 통합관리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목적)

현재 우리병원에 사용 중인 화장실 위생용품의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내용물의 교환 및 고장 시 A/S를 원활하게 실시코자 하는데 있다.

제3조 (일반사항)

<조선대병원을 “병원”, 화장실 위생용품 납품회사를 “계약자”라 칭한다.>

1. “계약자”는 소변기 세정제, 토크프리미엄 방향제, 토크 거품비누, 유성겔, 소변기 세정제 디스펜서, 토크프리미엄 방향제 디스펜서, 토크 거품비누 디스펜서, 유성겔 디스펜서 등을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각종 물품을 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병원”의 시설 내 소변기 세정제 디스펜서, 토크프리미엄 방향제 디스펜서, 토크 거품비누 디스펜서, 유성겔 디스펜서 등이 파손, 훼손, 오염, 탈색, 추가설치 요구 시에도 무상으로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토크 거품비누 디스펜서 등을 2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그 결과를 “병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특히 토크프리미엄 방향제 디스펜서, 유성겔 디스펜서, 소변기 세정제 디스펜서, 소변기 센서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관리하여 그 결과를 “병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5. “병원”의 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용기류(디스펜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병원”이 용기류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병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용도나 사용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위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이나 개선, 점검횟수의 추가, 불량제품의 교환, 반품 등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8. 설치된 토크프리미엄 방향제, 소변기 세정제, 토크 거품비누 등의 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신속히 교체를 하여야 한다.
9. 계약수량은 예정수량으로 “병원”의 사정에 의해 발주량이 증감될 수 있다.
10. “계약자”는 위생용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납품된 물품사용 중 물품 하자 및 민원 발생 시 “병원”은 공인인증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2. “계약자”가 규격이 상이한 제품 납품 시 “병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3.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고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4조 (관리품목 및 예정 사용량)

1. 소변기 세정제(325ml 내외): 1300개/연(109개/월)
2. 토크프리미엄 방향제(75ml 내외): 700개/연(59개/월)
3. 토크 거품비누(1,000ml 내외): 1,200개/연(100개/월)
4. 유성겔(250g 내외): 150개/연(12개/월)
5. 단, 신규 설치 및 폐쇄로 인한 수량변동은 가능하다.
6. 소변기 세정제와 거품비누는 새로 바뀔 때 따라 예정 사용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7. 세정제, 방향제, 거품비누, 등은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사용량의 증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점검 및 분사 설정 주기)

1. 점검 주기
 - 가. 1회/월 이상

항목 \ 용품	소변기 세정제	방향제	유성겔
내용물	1회/1개월 (다이용 개소와 계절에 따라 변동 가능)		
배터리			
상태			

- 나. 1회/주 이상

항목 \ 용품	거품비누
내용물	1회/2주 (다이용 개소와 계절에 따라 변동 가능)
상태	

2. 분사 주기 설정

용품	분사 주기
소변기 세정제	1회/30분
방향제	1회/15분

3. 상기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제품의 상태 미화, 교환 등 상태를 점검한다.
4. 제품의 고장이 2일 이상 발생 시 임대제품을 설치 후 수리토록 한다.

제6조 (교체 및 점검)

1. 월 교체 및 점검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시 후에는 부서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2. 각 제품 설치 개소 목록과 개수를 정확히 작성하여 교체 및 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개소 명칭 및 장소 변경 시 목록을 최신화 하여 제출한다.
3. 제품교환이나 고장수리 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증빙서류(사진)를 제출한다.
4. 잔여량이 5~10% 정도 남아 있을 때 교체한다.

5. 교체 점검 시 기존 내용물이 남아있어 교체가 필요 없을 시 신규 내용물을 부서책임자에게 반납한다.

제7조 (특수사항)

1.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남아있는 공기청향제 디스펜서를 토크 프리미엄 방향제 디스펜서로 무상교체 하여 기존 공기청향제 제품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기존 물비누 디스펜서를 거품 디스펜서로 전수 무상 교체한다.
3.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기존 220ml 인코세정제 디스펜서를 325ml 소변기 세정제 디스펜서로 전수 무상 교체한다.

위생용품 납품 시방서

1

토크 방향제

1. 용량은 75ml 이상 되어야 한다.
2.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위 항목에 대한 기준 이상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시험성적서에 납품업체의 모델명 필수 기재)
4. 방향제 성분 중 메탄올 및 포름알데히드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15분 간격으로 분사 되도록 한다. (단,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사 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2

토크 거품비누

1. 용량은 1,000ml 이상 되어야 한다.
2. 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유럽 에코라벨, 노르딕 스완 에크라벨)
3.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기준으로부터 적합해야한다.(중금속,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가 불검출 되어야 한다.)
4. 계약자는 위 항목에 대한 기준 이상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시험성적서에 납품업체의 모델명 필수 기재)
5. 거품비누 1회 사용량이 0.4ml ~ 0.5ml 으로써 1개당 약 2,000회 이상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품비누 용기(Dispenser)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 또는 버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거품비누 용기(Dispenser)는 사용량을 확인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투명창이 있어야 한다.
8. 거품비누는 무독성, 무공해 순식물성 친환경적 이어야 하며, 생분해도가 99% 이상 이어야 한다.
9. 거품비누는 거품력, 세정력, 행균성이 뛰어나야 하며, 세정 후 끈적거림 없이 청결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3

소변기세정제

1. 친환경제품이어야 한다.
2. 용량은 325ml 이상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위 항목에 대한 기준 이상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시험성적서에 납품업체의 모델명 필수 기재)
4. 세정제 성분 중 수산화나트륨(NaOH) 함량은 0% 이하여야 하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1% 이하여야 한다. 또한 세정제의 잔여량이 5~10% 정도 남아 있을 때 교체 하여야 한다.

2023년 2월